

「구미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미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영양·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영양 및 식생활조사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-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영양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구미 시민 영양관리 사업 출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조례를 적기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입안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할 것임.